

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중국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품목(兩用物項)의 수출통제 전문 행정 법규로서,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 ◆ 품목에 따라 별도의 수출통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관리·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
- ◆ 국가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 수출 허가 규범화와 최종용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수출통제 범위를 확장

1. 개요

□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발표

-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품목(兩用物項)의 수출통제 전문 행정 법규([링크](#))를 발표
 - 2022년 4월 한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2024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의 최종안을 통과하고 리창(李強) 총리의 서명을 거쳐* 12월 1일부 발효될 예정
 - * 중국 행정법규인 '조례'의 입법과정: 국무원 산하 주관부처가 초안을 작성(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력) → 의견수렴 →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거나 국무원 총리의 심사 결정(=최종안 확정) → 총리 서명 후 국무원과 주관부처가 공포

<참고: 중국의 수출관리 법체계>

- 中 수출관리는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법률, 조례, 행정법규, 목록(리스트), 주관부처 공고 등으로 구체화
- * (법률 및 조례) 수출입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 전략물자·국가안보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에 법적근거 마련
- * (행정법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인허가 관리절차, 중국 제품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방안 등 규정
- * (목록) 원칙적으로 수출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출 제한·금지 품목만 열거하여 수출관리·통제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
- * (공고) 자국 내 수급동향,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주관부처가 비정기적으로 발표

□ 국가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조례>는 2020년 시행된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의·수출통제·통관관리 및 처벌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문 법규임

- 기존 품목(핵·미사·알·화학품 등)별 별도의 수출통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 품목 전체 수출을 관리·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합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개요>

구분	내용
개념	-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포함)
분류	- 핵, 생물류, 관련 화학품(=독성 화학품), 미사일류, 상업용 암호, 모니터링 화학품(=화학무기 제조 가능한 화학품) 등 6종
품목 지정	-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을 통해 지정
주관부처	- 상무부 주관, 품목에 따라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처별 협력 - 해관총서가 수출 통관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담당

자료 :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주요 내용

- 총 6개 장·50개 조항으로 구성, 수출 허가 규범화와 최종용도 관리에 방점
 - ▲국가 안보 보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규범화를 입법목적으로 명시
 -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수출통제 대상, ▲수출관리 및 통제 체계 및 수출 허가 프로세스, ▲최종사용자 및 용도 관리,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내용 포함
-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최종사용자·용도 관리, 통제목록 등 조항을 3개의 절(節, Section)로 묶어 규정함으로써 관리·통제 조치를 구체화

<조례 각 장별 주요내용>

장(章)	내용 요약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의 원칙 및 책임 부서의 역할을 규정
제2장 통제 정책 (제9조~제13조)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위한 정책 수립, 통제품목 목록 작성, 위험 평가 및 임시 통제 조치에 대해 설명
제3장 통제 조치 (제14조~제30조)	-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위한 허가 절차, 조건, 서류 제출, 유효 기간 및 면제 조건,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사전 승인, 변경 절차, 통제 대상자 관리 및 거래 금지 등을 규정
제4장 감독 관리(제31조~제38조)	- 허가증 제출, 불법 수출 지원 금지, 서류 보관 의무 등 기타 통제사항 명시
제5장 법적 책임(제39조~제46조)	- <수출통제법> 및 본 <조례>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조치
제6장 부칙 (제47조~제50조)	- 모니터링 화학품, 이중용도 품목의 중국 경유·재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통제 조치 및 법적 근거 등을 명시

자료 :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이중용도품목의 법적 개념과 수출통제 범위 명확화

-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을 **군·민 이중용도 관련 데이터 등 범 국가안보 관련 품목과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군·민 겸용 품목**으로 확대
 - － 既시행 <수출통제법>은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를 이중용도품목으로 규정
 - － <조례>는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는 물론,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까지 이중용도품목으로 명문화** (조례 제2조)
 - － **해외업체/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부품, 기술 등)을 활용해 군·민 이중용도 품목을 제조·제가공하여 특정 국가/지역, 특정 조직과 개인에 제공할 경우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한다고 명시**(조례 제49조)함으로써, 중국 수출통제 제도 적용 범위를 확장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규범화

- **이중용도 품목 목록(리스트) 제·조정 근거를 명확화**
 - － 중국 국가안보 및 국익, WMD 확산 방지 의무에 따라 리스트를 제·조정하되, 필요 시 산업 조사 및 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
 - － **기업/상회 의견수렴 및 참여 없이 중국 정부가 통제품목 목록을 제·조정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정책 주도권* 보장**
 - * 조례 제11조: 목록 제·조정 시 적당한 방식으로 관련 기업/상회/협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산업 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이중용도품목 임시통제 조치 관련 내용을 구체화**
 - － <수출통제법>에서 규정한‘임시통제 조치 기한 최대 2년’을 강조하고 ‘**연장 가능 횟수 최대 2회**’등 내용을 추가(조례 제12조)
- **주관, 협력, 관리, 감독 부처를 명시하고 부처별 역할을 규범화**
 - － 상무부 주관, 업무 내용과 품목에 따라 외교부, 국무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해관총서 등이 협력하는 **기존의 분업체계를 법제화**

□ 캐치올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 허가 프로세스 규범화

- 수출허가 신청과정 내 최종사용자·용도 보고 등 수출업체 의무를 강조하고 시행 중인 <수출통제법> 대비 캐치올 규제*를 강화

*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 전략물자 수출통제 보완제도): 법령에 명시한 통제 대상 이외의 품목도 국가 안전 위협 및 WMD 확산 등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제도

- <수출통제법>에 따라 수출자의 ‘마땅히 알아야 하는’(應當知道) 의무를 강조
- 수출품목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를 수출업자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이중용도 품목 여부 확인을 위해 상무부에 문의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등 수출업자의 책임 강조 (조례 제14조)
- 이중용도 수출허가를 개별 허가 와 통용 허가 로 명문화하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허가 관리를 규범화
 - 중국은 현재 별도의 관리규범에 따라 개별 수출허가증(매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과 통용 수출허가증(유효기간내 다수 신청)을 신청, 취득하도록 관리

* 개별 허가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통용 허가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 통용 허가 관리방법>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전문 법규인 <조례>에 허가증 유형, 유효기간, 허가증 신청자격, 제출 서류, 취득/변경 절차 등을 명확화 (조례 제15조)
-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제품 수리 수요에 의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 일시적 수출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수출 허가 관리제도 개선 (조례 제19조)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증 유형>

구분	개별 허가	통용 허가	정보 등록
심사 빈도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	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 및 수령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등록(登記)
자격	-	개별건보다 엄격	일시적 수출
유효기간	1년	3년	-

자료 :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수출 정보를 핵심(관건) 요소와 非핵심(비관건) 요소로 분류하고, 핵심 요소의 유형별 수출허가증 변경, 재발급 절차를 명문화
 - 품목 유형, 수출국/지역, 최종사용자, 최종용도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여, 핵심 요소 변경 시 상무부에 보고 및 수출허가증 반려 및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발급 대기 기간의 수출은 잠정 중단한다고 규정
 - 그 외 비핵심 요소가 변경될 경우, 수출업체는 중국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20개 근무일 이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

- 최종사용자와 용도, 수출업자 및 대상에 대한 관리 강화
 -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 <조례>에 “중국 상무부는 최종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평가, 검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
 - <수출통제법>에 근거,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은 수출금지대상목록에 올리도록 ‘통제 목록’(管控名單) 적용
 - <수출통제법> 대비 ‘통제목록’등록 요건에 1)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으로 대량살상무기/운송도구를 설계/생산/사용, 2) 중국 관련 부처로부터 교역/협력 제한 및 금지 처벌 등 2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수출 대상에 대한 관리 강화
 - 통제 목록 내 수입업체나 최종사용자와 거래가 필요한 예외의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수출 대상 관리제도 개선
 - ‘통제 목록’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모니터링 목록’(關注名單) 제도 도입
 -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수입업체와 최종사용자를 ‘모니터링 목록’(關注名單)에 등록
 - 수출이 금지/제한되는 통제 목록과 달리, 모니터링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및 사용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
 - 상무부 검사에 협조하거나 최종사용자 변경, 제3자에 이전 등 행위가 없음을 증명하면 모니터링 목록에서 제외 조치

<중국 모니터링 목록과 통제 대상 목록>

구분	모니터링 목록	통제 대상 목록
지정 근거	-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중국 국가 안보 위협, 국익 손해, WMD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 등 -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으로 대량살상무기/운송도구를 설계/생산/사용 - 중국 관련 부처로부터 교역/협력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수출 관리	- 통용 수출허가증과 일시적 간소화 수출허가 신청 불가 - 개별 수출허가증 신청 시 최종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평가와 수출업체의 수출통제 법규 준수 관련 승낙서 제출 의무화	-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서 제외	- 상무부 검사에 협조하거나 최종사용자 변경, 제3자에 이전 등 행위가 없음을 증명	- 관련 문제를 해소했음을 증명

자료 :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세계 평화 수호’ 명분을 내세워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법제도 정비에 속력
 - 2020년 12월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근간인 <수출통제법> 시행 후 4년 만에 이중용도 품목 관련 전문 법규인 <조례>를 발표 및 시행
 - 최근 중국 정부는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인 <관세법>(2024.12.1.일부 시행), 희토류 전문 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2024.10.1.일부 시행) 등 수출관리, 핵심광물 관련 전문 법률/법규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22.4월 발표한 의견수렴안 대비, 최종안은 “對中 견제에 대한 맞대응”보다 “국제 의무”, “WMD 확산 방지” 등을 강조
 - <조례> 발표 당일(10.19일) 중국 사법부·상무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의 제정은 ‘통일·안정적·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의 합법적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
 - * 2년 전의 조례 ‘의견수렴안’은 이중용도품목 목록 제정 등에 있어 중국 외교정책의 수요,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對中 협력 등을 요인도 고려하여 국가/지역별 수출통제 리스크 등급을 확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

□ 한국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사전 대비책 마련 필요

-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가 강화, 유연해짐에 따라,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통제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 존재
 - 최근 중국은 갈륨·게르마늄('23.8.1일부), 흑연('23.12.1일부) 등 핵심 광물 관련 품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확대 및 정비 추진
- <수출통제법>,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중국산 수입 시 최종용도 및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 및 조사에 대비하여 **최종용도 및 사용자에 대한 증빙서류 사전 준비 등 조치 필요**
 - 중국 수출 관련 법률·법규, 수출품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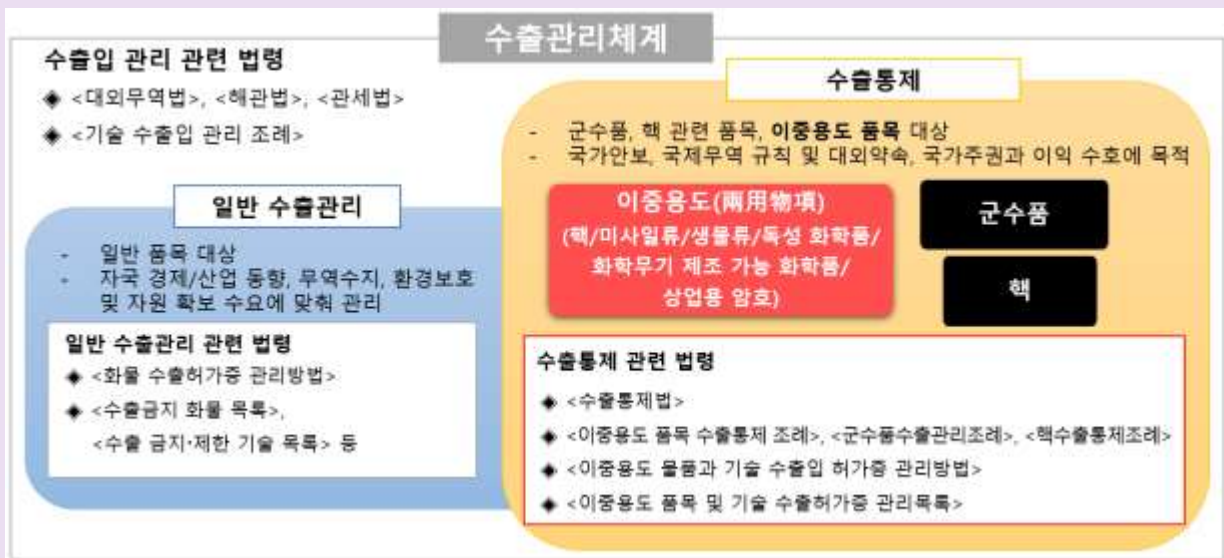
.끝.

참고

중국 수출통제 제도

- 중국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 품목(화물, 기술과 서비스 포함)의 수출을 차단,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 (법적 근거) 2020년 말 시행된 <수출통제법>을 근간으로,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조례>, <군수품수출관리조례>, <핵수출통제조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등에 따라 수출통제 및 관리
 - (품목) 크게 군수품, 핵 관련 품목,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대상으로 지정 이중 이중용도 품목은 1) 핵 이중용도 품목, 2) 미사일류 이중용도 품목, 3)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4) 독성 화학품(=관련 화학품), 5) 화학무기 제조가능 품목(모니터링 화학품), 6) 상업용 암호 등 6종으로 세분화하고 매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을 통해 지정

<중국 수출관리체계>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주관부처) 행정법규 제정, 수출통제 대상에 대한 관리 실무는 상무부가 담당하고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정책 제정, 수출통제 관리에 참여

<중국 수출통제 행정관리체계>

항목	관련 부처
핵/핵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국가원자력기구, 외교부와 협력하여 관리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리
화학품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 등과 협력하여 관리
미사일류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장비발전부와 협력하여 관리
상용암호화 품목	상무부가 국가암호관리국과 협력하여 관리
화학무기 제조가능 품목	상무부와 공신부가 수출경영자 자질 관리, 공신부가 세부적 수출심사 책임
군수용품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장비발전부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수출허가) 주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 해당 품목의 수출허가증 취득 후 수출 가능